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69
----------	------

2019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2월 17일, 김태수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나.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 다.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안 제5조)
- 라. 보조금지급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안 제6~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이 재 호)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 서울시 현황에 맞게 유아숲체험원 규모 및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상위 법령 분석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교육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법령임.

- 2012년 7월 제정될 당시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은 2만 m^2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1만 m^2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광역도시의 경우 산림면적 확보가 어려워 등록기준 면적 축소의 요구가 있어왔음.
- 2018년 8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특별시장은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있음.

2) 서울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에서는 유아숲체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2015년 까지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유아숲체험원 10개를 조성하여 62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중임.
- 2017년부터는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50곳을 조성하였음.
- 법령 제정 이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유아숲체험원 관련 사업은 일부 국비를 지원 받아 조성한 대상지도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설치 요구가 있음.

〈서울시 유아숲 체험시설 추진실적〉

구 분	총계	'15년 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비 고
총 계	312	28	13	106	105	60	
유아숲체험원	62	28	13	6	5	10	유아숲체험장 포함
유아동네숲터	250	-	-	100	100	50	

3) 조례안 조항에 관한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는 산림, 산림교육,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유아숲 체험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식생이 다양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1만㎡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 서울시의 경우 화장실,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넓은 면적이 필요한 ‘유아숲체험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접근 가

능하고 숲을 자연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므로,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동네숲터'라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향후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안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 산림청장이 계획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제2차 산림교육종합계획(2018~2022년)이 발표된 상태로
 - 서울시에서는 2017년 유아숲 체험시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교육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안 제4조의 내용은 산림청장의 산림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산림교육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조치이며, 향후 정책변화나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③ 안 제5조(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

- 안 제5조는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을 5천㎡이상, 유아동네숲터는 300~5,000㎡로 정하였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유아숲체험시설의 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③ 안 제6~7조

- 안 제6조 보조금, 제7조 표창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

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산림교육 운영 업무 시행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